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병원 및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의 진료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·조정 및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는데, 위탁의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업무 위탁에 한계가 있었음

이에,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전체로 확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용(약제비용 포함)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전체로 정하고자 함(안 제17조의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4조의3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**방법 및 절차**”를 “**방법, 절차 및 지원대상**”으로 한다.

① 공단은 법 제24조의3에 따라 보훈병원 및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(이하, “위탁병원”이라 한다)의 진료비용(보훈병원의 처방전 또는 위탁병원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청구하는 약제비용을 포함한다)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·조정 및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. 단,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의 진료비용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진료비용에 한한다.

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의2(업무의 위탁 등) ① <u>공단은 법 제2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·조정 및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.</u> 1. <u>제15조의2에 따른 약제비용 중 보훈병원의 처방전 또는 국가로부터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(이하 “위탁진료병원”이라 한다)의 처방전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청구하는 약제비용</u> 2. <u>진료대상자에 대한 위탁진료병원의 진료비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</u> 3. <u>진료대상자에 대한 보훈병원의 진료비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진료비</u> ② <u>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“진료대상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</u>	제17조의2(업무의 위탁 등) ① <u>공단은 법 제24조의3에 따라 보훈병원 및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(이하, “위탁병원”이라 한다)의 진료비용(보훈병원의 처방전 또는 위탁병원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청구하는 약제비용을 포함한다)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·조정 및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. 단,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의 진료비용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진료비용에 한한다.</u> <삭 제>

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.

1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·제3항 또는 제5항
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5항(같은 법 제73조 및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3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5항

4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5항

5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

6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

7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

<u>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5항</u> 8. 「<u>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20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4항 ③ (생략) ④ 제1항과 관련된 비용의 청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.	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<u>방법, 절차 및 지원대상</u> ----- ----- --.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	
연락처	(044) 202 - 5641